

대전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134512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94,102원과 그 중 114,316,271원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0. 5. 14. 접수 제550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6. 5.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229,500,000원, 보증기한 2016. 5. 13.부터 2017. 5. 12.까지(이후 2021. 5. 7.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 3)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4) 피고 회사는 2020. 8. 18.경 D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20. 10. 20. D은행에게 114,316,271원을 변제하였다.
- 5)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8%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277,831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담보제공

- 1) 피고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14.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14. 접수 제55096호)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합계 114,594,10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14,316,2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2.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약 5개월 후인 2020. 10. 20.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부터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게 수신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일부 지급받는 등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각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 B가 기다려달라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 C로서는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대여금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명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18.3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5257.5㎡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 5257.5분의 32.1559

